

공 시 송 달 공 고

불법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른 “**행정대집행 계고(3차)**” 를 우편, 교부 등으로 송달하여야 하나, 소유자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불법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(3차)
2. 처분근거 :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
3. 공고내용

성 명	김 호 천
위 치	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5-1번지 일원
위반행위	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(건축법 제20조 위반)
대집행 대상	불법 가설 축사 4동 (주1 352㎡, 주2 672㎡, 주3 192㎡, 주4 145㎡)
원상회복 기간	2021. 7. 30.까지
원상회복 미이행시 처분	행정대집행 (강제 철거)

4. 공고기간 : 2021. 5. 31. ~ 2021. 6. 14.(15일간)

5. 공고장소 : 영동군청 홈페이지, 게시판, 불법행위 현장

소유자 및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영동군 도시건축과 (☎043-740-3391)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소유자(행위자)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1. 6. 1.

영 동 군



제2021-1호

행정대집행 고고서

성명: 김호천 귀하

주소: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범화로 111-80

(송달주소: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강변로 288-16)

도시건축과-47554(2020.10.6.), 53934(2020.11.12.)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 가설 건축물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가축분뇨 유출,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및 불법 축사 집단화 우려 등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7월 30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「건축법」 제79조 제1항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, 「행정대집행법」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집행 실행(철거) 후 귀하의 시설 내 남아있는 돼지는 지체없이 귀하께 인도하니, 귀하께서 인수를 거부할 경우, 돼지를 보관할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관리할 인력도 없어 이를 매각하고, 매각에 따른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반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5-1 등 일원	불법 가설 축사 (4동)	주1 352㎡, 주2 672㎡ 주3 192㎡, 주4 145㎡	강제 철거

2021년 1월 27일

영 동 군

